

의학적 측면에서 본 고문의 심각성

양길승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1. 들어가는 말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희망을 버려라.”

단테의 신곡에서 따왔다는 이 문구는 영국 런던에 있는 던젠(Dengeon: 토굴감옥)의 입구에 붙어있다. 수많은 고문도구가 밀납인형과 함께 전시되어있는 이곳은 고문으로 악명을 날리던 곳을 관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다. 고문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고문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 희망을 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 문구를 읽는 것만으로도 고문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

멀리 외국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도 고문에 대한 공포는 살아있는 현실이다. 김근태, 권인숙, 박종철 ... 누구라도 기억하고 있을 이 이름들 외에도 고문 피해자의 명단은 한없이 이어져 나간다. 민주화운동의 투사만이 아니라 그 가족과 친지들, 형사사건의 피의자들, 마약류 사건의 피의자들 등 사회 어느 계층의 누구라도 고문이 당연시 되어온 사회에서는 자유롭지도 안전하지도 않았었다.

사람은 희망을 버리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희망을 박탈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인간됨을 말살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반인간적인 고문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용납하고 외면해버리고 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서 희망을 앗아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희망 대신에 공포를 안고 살아갈 수는 없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문에 대해 항거하고, 고문을 추방하기 위해 싸워야만 한다.

여기에서 의학적으로 밝혀진 고문 피해를 살펴보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바로 이해하여 필요한 도움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서이며 우리사회에서 고문추방운동이 발전되어 나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2. 고문의 정의

1975년, 일본 동경에서 열린 세계의학회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고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단독적으로 또는 어떤 권력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하여금 억지로 정보를 내놓게 하거나, 자백을 하게 하거나 그밖의 목적을 위해서 고의적이고, 조직적이며 동시에 악의에 찬 방법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고문이라 한다.” (토쿄선언) (Torture is defined as the deliberate, systematic or wanton infliction of physical or mental suffering by one or more persons acting alone or on the order of any authority, to force other person to yield information, to make a confession, or for any other reason.)

국제연합에서는 1984년에 발표한 고문과 그밖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서 고문을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어떤 개인으로부터 자백을 받거나, 제 삼자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또는 그에게 어떤 처벌을 가할 목적으로 한 개인에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또한 어떤 목적으로 한 개인을 위협하거나 강요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진다. 이 때 가해지는 폭력은 대개 공권력이나 공권력처럼 인식되는 주체에 의해서 허가되었거나 적어도 묵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법의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고통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고문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김이영(한양대 의대 정신과 교수)은 고문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계획된 폭력을 행사한다.

둘째, 대개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조금도 저항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가해자는 거대한 공권력의 비호 아래서 폭력을 행사하고 형식상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듯 하거나 최소한 합법적임을 내세우고 있다.

셋째, 내세우는 목적은 의심되는 죄를 자백하거나, 어떤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넷째, 그런 고문의 결과는 피해자의 전 인격의 파괴로 나타난다.

다섯째, 어떤 강한 사람이라도 가해자가 작정하고만 있다면 끝까지 고문을 견뎌 내는 사람은 없다.

여섯째, 고문은 피해자가 죽거나, 피해자가 자기의 주체성을 포기하고 가해자의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아니면 돌발사태로 고문의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만 끝난다.

한마디로 고문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인간의 인간됨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The Breaking of Bodies and Minds, 1985)

3. 고문의 피해

고문에 의한 피해는 고문방식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고문 피해자가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가를 확인하게 되기 까지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기간의 구금상태를 지난 후이다. 따라서 고문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골절, 열상, 타박상, 고막천공, 내장파열, 신체 일부의 기능손상, 정신이상, 사망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고문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조사한 몇가지 보고 사례들을 보면 직접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고문의 후유증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최초의 고문피해자 조사 보고인 Eitinger(1971)의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상의 장애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227명 중 184명(81.8%)에서 뇌기능장애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114명(62%)이 신경기능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59명(32%)이 뇌파검사상의 이상소견을, 75명(41%)이 뇌척수액검사에서 이상소견을, 150명(82%)이 기뇌조영술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덴마크 의사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1974년에 135명의 고문피해자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경및 감각 증상을 보면 두통 (36%), 난청 (15%), 시각장애 (14%), 알콜감당능력

장애 (11%), 촉각장애 (6%), 어지러움증 (4%)이 나타나고 있으며, 신경증상 외의 신체 증상으로는 소아장애(32%), 관절통(19%), 심폐기능장애(22%), ~~반행장애~~(17%), 구타부위의 계속 통증(18%), 기타증상(18%)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의 62%가 이러한 증상들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 밖에 정신증상으로는 기억 및 정신집중장애(45%), 정신증상(48%), 수면장애(47%), 성기능장애(49%)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전체의 75%나 되었다.

남미의 고문피해자 41명을 분석한 Allodi의 보고에 따르면 고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체적 고문으로 구타(주먹, 몽둥이, 발길, 회초리 등 사용)(40명), 전기고문(27명), 물고문(15명); 담배불, 화학약품, 뜨거운 물 고문(5명), 골절(11명), 성적 공갈(14명), 강간(5명), 금식(물과 음식)(16명), 기타(12명) 등이 있었으며, 심리적 고문으로는 말로 협박(32명), 행동으로 위협(35명), 본인 살해위협(23명), 가족 살해위협(13명), 살해 행위의 실연(12명), 기타(12명)이라고 한다. 이들 고문피해자들이 보이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41명의 고문피해자가 보이는 증상들

증상의 종류	종례수
심신장애	38
두통 및 기타 동통	22
신경질	33
불면증	28
악몽, 공황	14
손떨림, 식은땀, 실사, 기운없음	26
행동 및 성격변화	20
칠수, 공격성, 충동성	13
자살기도	4
성기능장애	5
정서장애	39
우울	29
공포	12
불안	36
정신기능	
혼동, 지남력장애	5
기억장애	12
집중장애	13
신체손상	31
화상 및 상흔	21
골절	8
중화신경—난청	5
체중감소	10
기타(치아결손, 힘줄파손 등)	11

앞에서 인용한 연구보고서와 기타 보고서들을 종합하여 김이영교수는 고문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신체적 증상으로는 가장 흔한 것이 통증이다. 치통, 두통, 관절통, 근육통 등 다양한 통증이 나타난다. 이런 통증은 물론 고문 직후에 심하다. 그러나 걸음으로 드러나는 외상이 없어진 다음에도 몇달간, 길게는 10여년까지 계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음으로 흔한 것이 소화기 계통의 장애로 소화불량, 식욕부진, 설사 등이 나타나고 때로는 혈변을 보기도 한다. 협심증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유없이 혈압이 불규칙해지기도 한다.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 하여 호흡곤란을 느끼고 기침도 많이 한다. 비뇨기 계통의 증상으로 혈뇨가 나타나기도 한다. 배뇨장애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며 성기능장애로 발기불능이 나타나고 여자에게서는 월경불순, 더 나아가 불임증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성생활이 원만치 못하게 되는 것도 흔한 일이다.

둘째, 정신적인 후유증은 아주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가장 흔한 것이 기억장애, 인지기능의 장애, 정신집중의 장애 및 감정조절의 장애이다. 쉽게 흥분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공포와 불안도 아주 흔하다. 지적능력의 저하가 나타나며, 흔하지는 않지만 망상과 환청 등 정신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섬망상태에 있을 때도 있다. 성격 변화가 심해져 외부환경과 접촉을 피하기도 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가 아주 힘들게 되기도 한다.

인격의 파탄이 오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현상이다. 전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극도로 약화된다.

우리나라에서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체계적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개인적으로 몇몇 피해자의 치료 및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고 형식으로 발표한 것은 하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고문피해자의 특성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외국보다 높고, 신경 및 감각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정신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상담을 한 고문피해자들이 대부분 운동권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를 호소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스스로 억제하려고 애쓰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알려져있는 여러 사례들을 볼 때 정신증상을 가지고 있는 고문피해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평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정신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고문피해자의 실상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4. 고문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70년대 초 남미, 아프리카 및 중동으로부터 많은 난민이 유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들 난민 중에 고문 피해자가 많이 있어서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힘들게 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에 국제사면위원회에서 각국의 의학협회에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의학적 도움을 요청하였고, 덴마크 의학협회의 의료진이 이 위원회의 협력으로 집중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고문피해자를 돕기 위한 치료 및 재활작업이 의료의 한 분야로만 들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에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의대병원에 고문피해자만을 위한 병실이 마련되었고, 1984년에는 고문피해자를 위한 국제적 재활센터가 독립된 기구로 설치되었다. 이후 이와 비슷한 기구가 벨기에, 영국, 프랑스, 캐나다, 미국, 그리고 칠레에 설립되어 현재는 20개가 넘는 치료 재활시설이 만들어졌다. 1984년 이후 국제적인 학술회의가 개최되어 제3차 국제회의는 1991년 칠레 산티에고에서 70여

개국가에서 300여명이 참석하였고, 한국에서도 고문피해자 서승희와 민변의 조용환 변호사와 필자가 참석하여 발표를 한 바 있다.

외국의 치료 및 재활 경험에 따르면 처음 덴마크와 미국의 치료센터가 대학병원의 정신과 안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였다가 많은 부작용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고문피해자들은 자신을 고문한 가해자들이 가장 잘 조직된 거대한 기구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잘 조직되고 거대한 기구를 가진 기관을 기피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모든 치료 및 재활 기관들은 피해자들이 안전함과 안온함을 느낄 수 있는 소규모의 가정집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정신적 장애와 그에 따른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장애 또는 파탄이 주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치료와 재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치료기관과의 연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또다른 감금의 형태로 보일 수도 있는 입원은 가능한한 피한다고 한다.

고문피해자의 치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문피해자가 상실한 인간에 대한 신뢰와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 치료를 맡은 사람과 피해자 간의 관계가 다른 어떤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대부분의 고문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고문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항복을 요구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철저히 잃어버리게 되어 치료과정에 있어서도 치료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치료의 결과에 대해서도 불신하기 일췌이다. 따라서 피해자와 치료자 간에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어려운 점이자 요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체적 접촉(고문 당시에는 바로 고통을 주었던 것이었던)을 통해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방법과 피해자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동료인 같은 고문피해자들과의 집단적인 치료방법이 치료의 과정에 중요하다. 일단 치료를 할 만큼의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면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정도와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로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고문받은 사실을 폭로하면 보복당한다는 협박과 서약 때문에 폭로하는 것 자체가 고문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 치료를 어렵게 한다.

치료와 재활에 있어서 또다른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가족이다. 고문피해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도 여러가지 면에서 고문의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치료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가족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까지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족 속에서 가지고 있던 원래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에는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은 고문이 불러온 고통을 온가족이 같이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회의 역할도 넓게 보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5. 맺는 말

고문이 불러오는 인간성 파괴의 재앙은 비단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만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고문의 피해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용납하는 우리 모두에게 고문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어디엔가 고문에 비명지르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가 없다. 합리적인 설득 대신에 고문의 강압이, 과학적인 수사 대신에 고문이라는 야만적인 폭력이, 합법적인 절차 대신에 고문이라는 불법이 자리잡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고, 어떤 생각이나 행동도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사회에서 고문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는 당위이다. 그러나 당위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고문없는 사회가 오지는 않는다. 고문없는 사회는 당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뜨거운 분노의 가슴으로 부딪쳐 나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다.

고문을 없애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고문은 절대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사회의 모든 부분이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고문을 고발하고, 고문을 자행하는 자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고문을 돕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고문피해자를 진료하였을 때에는 그를 돕기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고문에 의한 피해자에게는 필요로 하는 모든 도움이, 치료와 재활을 포함해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주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도 고문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고문피해자를 치료하는 전문기관은 꼭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서 고통받고있는 고문피해자들을 그 고통의 늪에서 끌어내어 우리의 형제자매로 바르게 안아내기 위한 노력이 외롭고 힘들게 진행되어 왔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손을 함께 잡아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희망을 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 문구를 읽는 것만으로도 고문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

같이 외국이 아니다. 우리 정내에도 고문에 대한 공포는 살아있는 현실이다. 김근태, 김진우, 차준철 ... 누구라도 기억하고 있는 이 이름들 외에도 고문 피해자의 명단은 한없이 이어져 나간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아니다. 그 가족과 친척들, 장인이 안의 피의자들, 피안장 사건의 피의자들 등 사회 어느 계층의 누구라도 고문이 당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들을 위한 지원과 치료는 절박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희망 대안이 공감을 받고 있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사회 분위기는 치기 위해서도 고문에 대해 적대하고, 고문을 주장하기 위해 광의야만 한다.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밝히진 고문 피해를 살펴보는 것은 피의자의 고통을 바로 대하여 필요한 도움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서이며 우리사회에서 고문수감운동이 발전하여 피해자들을 바라기 때문이다.

고문의 정의

1975년, 일본 동양에서 열린 세계의학회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고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임의적으로 또는 어떤 권력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정보나 내보내게 하거나, 자백을 하거나 고백의 목적을 위하여 고의적이고, 조직적이며 동시에 악의에 찬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Torture is defined as the deliberate, systematic or wanton infliction of physical or mental suffering by one or more persons acting alone or on the order of any authority, to force other persons to field information, to make a confession, or for any other reason.)

국제인권법에서는 1984년에 제정된 고문과 그 밖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서 고문을 공식적으로 정의하였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